

	<b>의료정보과운영규정</b>	규정번호	3-4-21
		제정일자	2020.03.01.
		폐지일자	2020.07.13.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의료정보과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의료정보과의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대학의 제규정이 이 규정에 우선하며 의료정보과 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.

제3조(준수의무) ① 의료정보과 교수, 조교,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준수한다.

## 제2장 교육과정

제4조(교육과정 편성) ① 의료정보과 교육과정은 대학 학칙과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의 교과목 이수체계에 근거한다.

② 교육과정은 교양필수, 교양선택, 전공 등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교육과정 개선) ① 교육과정개선은 의료정보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료정보과 교수회의에서 심의·의결한다.

② 의결된 안은 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.

## 제3장 수업 및 성적평가

제6조(수업)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학칙에 따른다.

제7조(성적평가) 학업성적 평가는 대학 학칙에 따른다.

## 제4장 졸업

제8조(졸업이수학점) 의료정보과 학생의 최소 졸업이수 학점은 대학 학칙에 따른다.

## 제5장 교원의 시수

제9조(교수시간) 의료정보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제6장 교원의 학생지도

제10조(학생지도) ① 의료정보과 전임교원은 대학 학칙에 준하여 학생회 및 학생활동의 지도 육성을 한다.

② 의료정보과 전임교원은 평생지도 교수제로 교수-학생관계를 유지하여 대학생활의 적응을 도우며, 학습,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학생지도를 시행한다.

## 제7장 행정체계

제11조(학과장) ① 의료정보과에는 학과장 1인을 둔다. 학과장은 학과를 대표하여 학과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학과장은 학과의 인사, 예산편성 및 집행, 기타 중요 정책결정 시 의료정보과교수회의를 통해 논의된 안을 관계 부처장과 협의하여 학과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발휘하도록 한다.

제12조(학습성과위원장) ① 의료정보과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학습성과위원장을 둔다.

② 학습성과위원장은 전임교원으로 하며,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

③ 학습성과위원장은 학과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## 제8장 위원회

제13조(위원회 설치) 의료정보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 및 심의, 의결하기 위해 의료정보과 내에 의료정보과운영위원회, 의료정보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, 의료정보과교육과정CQI평가위원회, 의료정보과산학협력운영위원회, 의료정보과학습성과평가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위원회 구성) 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학과 교수가 될 수 있으며, 위원은 의료정보과 교수, 타학과 교수 및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15조(위원회 기능) ① 의료정보과운영위원회: 학사운영, 학생지도, 학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·의결

② 의료정보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: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, 개선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·의결

③ 의료정보과교육과정CQI평가위원회: 교육과정의 품질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품질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·의결

④ 의료정보과산학협력운영위원회: 현장실습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·의결

⑤ 의료정보과학습성과평가위원회: 학기별 학년별 학습성과 달성, 학습성과 평가체계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·의결

제16조(회의 및 의결) 각 위원회의 지침에 준한다.

제17조(의료정보과교수회의) 의료정보과교수회의는 학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과운영 전반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및 의료정보과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·의결 한다.

## 제9장 조 교

제18조(조교의 자격 및 배치) ① 조교는 대학이 정하는 자격에 준한다.

② 효율적인 학과운영지원을 위해 1명 이상의 조교를 두며, 교무행정, 학생지원과 현장실습 등을 담당한다.

제19조(조교의 업무) 조교는 업무분장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 이 규정은 2020 년 7 월 13 일부로 폐지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폐지하고 2020년 7월 13일부 보건 의료정보관리교육운영규정으로 제정한다.